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2. 1. 27. 시행)의 시행에 따라 새로 발생한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노무행정을 전담하는 일반임기제 1명(6급 1명)의 임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6명”을 “6명), 노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으로 한다.

별표 6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1
행정주사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u>6명</u>), 행정서기 중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 ----- ----- ----- 6명), <u>노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u>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